



Ⅶ. 싱가포르

SINGAPORE

1. 진입장벽 특징 • 319
2. 도입 취지 및 배경 • 319
3. 주요 진입장벽 • 319
4. 해소방안 및 향후 전망 • 337

VII

가

1. 진입장벽 특징

- 농업 생산이 거의 전무한 소규모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농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안전에 매우 민감하며 식품 수입허가시 사전에 승인된 국가의 식품 외에 철저한 샘플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가함
- 가공식품은 종류에 따라 검사방법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샘플 검사시 소요비용이 많이 들며, 인삼의 경우에는 수입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어렵고 까다로운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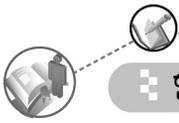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2. 도입 취지 및 배경

- 안전한 식품공급의 원칙하에 수입 농식품을 규제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 진입장벽

가. 부류별 수입관리현황

- 수출입 품목 검증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은 AVA(Agri-Food and Veterinary of Singapore, www.ava.gov.sg)로 신선농산물(과일 및 채소), 해산물 및



육류, 가공식품에 따라 시행 법령을 달리해 적용하고 있음

1) 농산물 수입관리현황

- 관리현황
 - 신선과일과 채소는 'Control of Plants Rules'을 통해 생산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 아래 수입 농산물을 규제하고 있음. 수입 결정여부는 식품안전요건에 따른 농약잔여물과 기타 유독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FAO/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함
 - 농산물 검역 관련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남미의 열대지방에 위치하는 33개의 국가임
 - 과일 및 채소 연간 수입면허비용 : \$378(AVA의 ICS로부터 받음)
 - ❖ 수입품목 샘플검사 시 별도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샘플검사 소요기간은 하루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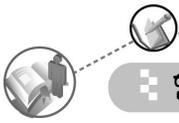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2) 육류 및 수산물 수입관리현황

- 관리현황
 - 육류 및 수산물 제품은 철저한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감염된 육류 및 수산물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안전한 제품 수출입을 목적으로 함. 'CAP 349A'라는 법령을 통해 수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 수입제품은 신선, 냉동, 가공, 통조림, 양념, 뼈째 혹은 뼈없는 상태 등의 형태로 수입될 수 있으나, AVA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함. 또한 AVA의 승인을 받기위해 생산국에서 발행된 가축보건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 육류수입 승인 대상국가

(2008년 8월 4일 기준)

| 국 가 | 쇠 고 기 | 양 고 기 | 돼 지 고 기 | 가금류 |
|-------|-------|-------|---------|-----|
| 아르헨티나 | + | + | 0 | + |
| 호주 | + | + | + | +1 |
| 벨기에 | S | + | + | + |
| 브라질 | + | + | + | + |
| 캐나다 | S | + | + | + |
| 칠레 | 0 | 0 | + | + |
| 중국 | + | 0 | + | S |
| 덴마크 | S | + | + | + |
| 핀란드 | S | 0 | + | 0 |
| 프랑스 | S | 0 | + | + |
| 독일 | S | 0 | + | + |
| 헝가리 | 0 | 0 | + | S |
| 아일랜드 | S | + | + | + |
| 이스라엘 | 0 | 0 | 0 | S |
| 이탈리아 | 0 | 0 | +3 | 0 |
| 일본 | S | 0 | 0 | 0 |
| 말레이시아 | 0 | 0 | 0 | + |
| 네델란드 | S | + | + | + |
| 뉴질랜드 | + | + | + | +1 |
| 필리핀 | 0 | 0 | + | 0 |
| 남아프리카 | + | 0 | + | + |
| 한국 | 0 | 0 | 0 | +4 |
| 스페인 | 0 | 0 | +5 | 0 |
| 스웨덴 | S | 0 | + | 0 |
| 스위스 | S | + | + | + |



| 국 가 | 쇠 고 기 | 양 고 기 | 돼 지 고 기 | 가금류 |
|------|-------|-------|---------|-----|
| 대만 | o | o | + | + |
| 태국 | o | o | o | S |
| 영국 | S | + | + | S |
| 우루과이 | + | + | o | o |
| 미국 | +2 | + | + | + |

(+:승인)(o:비승인)(S:수출일시중지)(+1&+2:AVA 승인 필요한 가금류&육류) (+3:돼지고기가공제품(only))(+4:치킨캔제품)(+5:돼지고기가공 제품들)

- 수산물은 식품 안전상의 이유로 생굴(깎 것), 조갯살, 게살 및 가공 새우류 품목이 냉장상태일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산지 위생증명서 및 AVA 샘플검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품목으로는 굴(생것/냉동)을 포함하여 냉동 피조갯살, 냉동 가공새우류, 냉동게살이 있음
- 생굴의 경우, AVA의 갑각류 위생 프로그램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에서만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생굴 승인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이 있음
- 품목별 수출입 허가비용
 - 육류품목(냉동/냉장/가공) 수입 : S\$4.60/100g 또는 일부분
 - 육류통조림 수입 : S\$77/건
 - 육류품목 수출 : S\$3/건
 - 육류품목 환적 : S\$20/건
 - 수산물 품목 수출입 및 환적 : S\$3/건
 - (❖ 육류품목 수입 및 환적 비용은 인상되었음)
- 육류 및 수산물 연간 수입면허비용 : S\$84
- (❖ 수입면허는 AVA의 ICS로부터 받음)

■ 농축수산물 수입절차

-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사업자등록 및 CR할당 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신청 및 세관(SC: Singapore Customs)에 관세 및 물품세 납부를 위해 등록 신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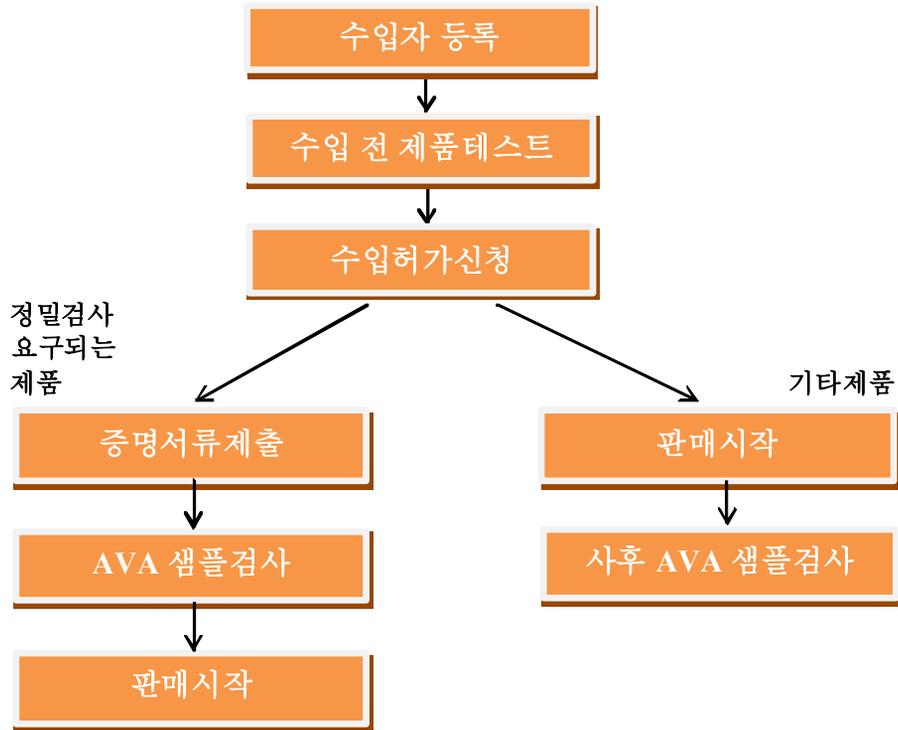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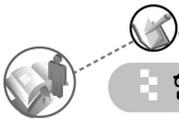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 싱가포르의 수출입허가와 수출입신고는 EDI(전자문서교환)로 처리하는 통관자동화 시스템(TradeNet System : www.tradenet.gov.sg)에 의해 결정됨 (AHTN 코드/AVA 상품코드)
-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수입허가 및 등록을 신청하면 샘플검사를 통해 허가를 내줌. 동식물,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AVA, 건강식품 및 의약품류는 HAS (Health Science Authority)임. TradeNet System을 통해 수입허가서를 출력함
- 육류 및 수산물 수입 시 추가사항
 - 구비서류 : 원산지 위생증명서 및 CITES 허가증(동식물보호협약 관련 허가서), 상업송장, Airway Bills,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등 관련서류
 - 수입상의 냉동 창고 상태 점검
 - Veterinary Public Health Laboratories에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여부가 결정됨

3) 가공식품 수입관리현황

-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가공식품의 90% 이상이 전 세계 140여 개의 국가에서 3,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제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AVA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 및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내용물 표기 방법, 식품 광고 등에 대한 법령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모든 수입제품은 'The Sale of Food Act' 및 'The Food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함

■ 가공식품 수입절차

- AVA에 수입자로 등록한 후,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전 품질관리검사를 위해 국가공인검사소로 제품테스트를 요청함
- 수입허가신청은 트레이드넷(TradeNe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HS 코드와 제품코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함.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문서로는 원산지 위생증명서 및 검사소의 식품 분석 리포트가 있음
- 외교용/개인용/샘플용은 별도 등록이 필요 없지만, 이 외의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초기 적발 시 최고 S\$1,000, 2회 이상 적발시 최고 S\$2,000의 벌금을 적용함



-AVA의 샘플 검사 후 통과 시, 판매승인을 하지만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을 압류 및 폐기함

■ 특정가공식품의 수입조건

-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식품 혹은 기존에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는 식품의 경우, 특정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제품별 별도의 수입요구조건을 수립함으로써 엄격한 검사를 실시함
- 특정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제품
 - Natural mineral water and spring water
 - Soy sauce and oyster sauce
 - Ready to eat food
 - Traditional Kueh (Cakes)
 - Infant Formula, Cereal

- Dairy products
- Flour/Corn starch
- Food from Eastern Europe
- Preserved Fruits
- Rice
- Maize and corn
- 이 외에 12개 품목이 있음

예) 생수 수출 시, 원산지 위생증명서 원본 1부(수입품목 세부사항, 미생물분 석보고서 및 화학성분보고서 포함), 생수 공급지의 지도 사본 1부, 화학성 분보고서의 경우, 3번 연속으로 검사결과에서 통과할 경우, 일년에 한번만 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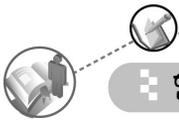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 아래 품목들은 허가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의 식품 안전당국에서 발행된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Breads, Chocolate products, Coconut milk, Infant cereal and formulae, Land snails, Minimally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Noodles and pastas, Traditional cakes, Cut sugarcanes, Mooncakes
- ❖ 싱가포르에서 인정하는 서류로는 건물의 사업허가 및 등록서, 위생증명서, HACCP 인증서 및 우수제조증명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s)가 있음

나. 부류별 수입 진입장벽 및 피해사례

1) 농산물 수입 진입장벽

- 현재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 시 면밀한 샘플 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이는 기존에 규정하지 않은 농약성분 함량 및 농약허용치를 초과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국산은 수입 시 바로 판매 가능하여 수입제도상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음
-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는 금년 중국산 샐러리와 시금치, 말레이시아산 케일, 2007년 말레이시아산 토마토 및 2006년 중국산 시금치 등이 있음. 싱가포르 EEP(Enhanced Enforcement Programme) 및 ESP(Enforcement Surveillance Programme)를 통해 재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재개할 수 있음



2) 육류 수입 진입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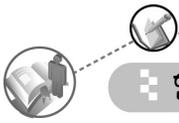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 2005년 9월 싱가포르 당국은 한국산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타국산 육류에 대해 수입금지령을 내렸음. 당시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남아공 다섯 나라에서만 육류수입을 허가했음. 2008년 8월 현재 거의 모든 육류 및 관련제품 수입 승인국으로는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네델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며,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일부 육류 수입을 승인하고 있으나, 한국산은 아직까지도 닭고기 캔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육류 수입을 금지하여 무역장벽으로 나타남
- 또한 당시 육류 수입금지시,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류까지 단속을 펼쳐 몇 차례 한국 상점에서 다시다, 스팸류, 즉석짜장과 만두, 쇠고기죽 등 한국산 육류가 조금이라도 첨가된 경우 모두 수거해 간적이 있음. 하루빨리 싱가포르-한국의 육류수입 조약이 진행되어 한국산 육류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켜 수입업자 및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임
- 육류수입 일시중지 사례
 - 호주산 즉석육류제품 수입 일시중지 : 2008년 5월 호주에서 생산된 즉석육류제품 (ready to eat meat products)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이 검출되어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음
 - 중국산 육류 및 육류제품 수입 일시중지 : 2007년 8월 중국산 육류 수입제품 (냉동 및 가공 돼지고기제품, 육류통조림제품, 가공치킨 및 햄제품)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 잔여물이 발견되어 수입을 중지시켰음. 관련 제품의 정밀검사는 금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지난 4월 중국의 10개 육류제품 공급업체에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가함
 - 이외, 2008년 육류제품의 수입이 일시 중지된 국가로는 브라질(쇠고기 및 돼지고기), 캐나다(가금류제품), 프랑스(즉석육류제품) 및 영국(돼지고기 및 양고기제품)이 있으며, 독일은 4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금류제품 수출을 중지하였음

3) 수산물 수입 진입장벽

- 수산물 수입 시, 수입제품이 도착하면 서류 확인 및 제품 외관의 모양, 상태 및 품질을 보고 샘플 검사 여부를 결정함. 제품에 의심이 갈 경우, 샘플검사를 진행하며 소요시간은 약 2주임. 현지 수입업체는 이 기간동안 제품의 시장반출 불가로 제품의 신선도 저하 등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음
- 수산물 수입 일시중지 사례
 - 캐나다 및 호주산 굴 수입 금지 : 2007년 12월 캐나다 및 호주지역 재배된 굴에서 극소한 양으로도 식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검출되어 수입 금지령을 내렸으나, 2008년 수입된 굴의 샘플 재검사 후 금지령이 해제되었음
 - 이외 금년 수산물 제품수입이 일시 중지된 국가 및 제품으로는 캐나다 및 호주산 굴제품을 비롯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생선 및 생선제품, 미국과 아일랜드산 굴, 노르웨이의 즉석 수산물제품이 있음

4) 가공식품의 수입 진입장벽

- 특정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제품마다 수입규정이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며, 샘플검사 시 소요비용 과다발생 등이 비관세장벽임. 또한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의 수입은 2005년 9월경부터 금지되었으며 아직도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임
- 실제 사례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주재 한국식품 수입업체는 한국산 간장을 수입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과 수입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수입 계획을 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식품 안전 요건에 따른 간장소스의 수입 결정 여부는 유독성 물질이 허가치를 초과했느냐에 따라 구분됨. 3-MCPD(간장내유해물질) 분석방법인 GC/MS를 통해 샘플 분석 결과, 유독성 물질이 0.02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함. 싱가포르의 실험실에 3-MCPD(간장내유해물질) 검사 의뢰 시 소요 비용은 건당 S\$380이며 유효기간은 6개월임. 단, 수입횟수 등 실적에 따라 AVA에 유효기간을 1년에 한번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5) 건강식품 수입 및 규제현황

■ 건강식품 시장현황

- 싱가포르의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싱가포르의 바이어들은 인근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까지 활동영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동남아시아까지 개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건강보조식품 가운데, 소위 영양제라 불리는 칼슘, 미네랄, 비타민 및 어유(캡슐형태) 등이 건강식품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들이 미국, 유럽 및 호주에서 수입된 것임
- 대표적인 한국산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인삼이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중국산과 미국 화기삼에 밀려 시장을 잠식당했음. 당시, 중국삼은 고려인삼에 비해 품질이 유사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가정책을 폈고, 미국삼은 고려인삼이 열이 있는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속설을 퍼뜨리며 세계 인삼시장을 공략함
- 몇 년간의 공사 홍보관축활동을 통해 현재 고려인삼은 현지인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고급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려인삼을 섭취하면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믿는 현지인들의 인식이 수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실함
- 또한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지역에 ‘대장금’, ‘궁’ 등 한국드라마를 통한 한류열풍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바꿔놓았음. 현지인들은 김치, 인삼, 유자차 등 한국음식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국식품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삼 수입현황

- 품목분류

| HS Code | Description |
|----------|--|
| 21069053 | Non-Alcoholic Ginseng Beverages (인삼음료) |
| 12112010 | Ginseng Roots In Cut Crushed Or Powder Form(뿌리인삼류) |
| 12112090 | Ginseng Roots In Other Form(뿌리인삼류) |

○ 인삼수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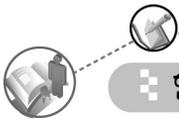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단위 :톤, S\$천)

| 국가 | 2005 | | 2006 | | 2007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미국 | - | 3,669 | - | 5,044 | 1 | 6,277 |
| 중국 | 32 | 4,401 | 19 | 2,737 | 16 | 3,450 |
| 캐나다 | - | 2,088 | - | 2,351 | - | 1,554 |
| 한국 | 8 | 536 | 9 | 968 | 4 | 1,464 |
| 말레이시아 | 195 | 1,414 | 98 | 1,287 | 11 | 1,203 |

- 지난 몇 년간 미국삼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 싱가포르 전체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했음. 미국삼은 뿌리삼 수입이 약 98%이며, 음료는 2%에 미치지 못함
- 중국삼은 2000년대 초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감을 거듭함. '07년 중국삼은 전체 시장의 24% 차지하였으며, 주로 일부 고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가로 다량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삼은 '07년 전체시장의 10%를 차지하였으며,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50%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0% 이상 증가하여, 고가품 수요가 늘어났음을 보여줌

■ 인삼 유통현황

- 수입되는 인삼제품은 <수입상> → <약재상> 또는 <전문판매점> → <소비자>라는 간단한 구조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음
- 과거에는 주로 차이나타운이나 재래시장의 약재상에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약국,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싱가포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강식품 유통업체는 Eu Yan Sang으로 현재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에 140개의 유명브랜드 소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Eu Yan Sang은 2006년 12월 미국 인삼회사인 Wisconsin Ginseng & Herb Co와 판매독점권 허가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Wisconsin 제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었음



- 소매가격은 한국산 6년 홍삼근 S\$2,500/600g, 미국산 6년 홍삼근 4,450/200g, 최고급 중국산 인삼근 S\$1,900/4.4g이며, 캡슐제품은 한국산, 미국산이 각각 S\$280/180정, S\$96.80/50정, 인삼차는 한국산, 미국산이 각각 S\$58/50포, S\$59.90/24팩으로 판매되고 있음. 기타 건강제품으로는 치킨에센스(S\$18/6병/박스), 생강주(S\$52.90/700ml), 인삼주(S\$63.10/700ml, 원료/미국삼) 등이 있음

■ 인삼 수입절차

- 인삼의 수입은 일반적인 수입절차 및 통관과정을 거쳐 수입되고 있음. 단, 처음 수입 시, 일반 식품과 달리 사전신고제이며 수입허가 절차상 여러 가지 실험결과 제출로 수입업체는 비관세장벽으로 느끼고 있음
- 싱가포르에 인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싱가포르 현지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TradeNet을 통하여 수입신청. 인삼수입의 경우, 제품이 단순가공 원료삼인지 제품화한 품목인지에 따라 수입절차가 다름. 예) 단순가공한 원료삼인 건삼류, 수삼류 등은 농수산물로 간주되어 사전 수입허가대상이 아니며 광고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통관 시 라벨링, 포장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으로 제품을 반송하고 수입업체에 벌금을 징수함. 문제가 없는 경우, 통관 소요기간은 하루임

■ 수입관리 현황

- 싱가포르의 건강식품 및 의약품의 수입, 판매 및 제조 허가를 관리하는 곳은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임. HSA는 보건식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보건식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관리함
- 수입허가 제외품목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 한약 재료이거나 재수출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수입된 식품은 보건식품 및 수입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삼류 중에서도 뿌리삼, 건삼, 인삼분, 아가리쿠스 버섯도 제외 품목임
- 싱가포르에서 보건식품 수입, 판매, 제조, 단순조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부의 의약품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에는 수입/도매/제조/제분허가증이 있음

○ 허가신청비용(2007년 2월 1일부터 인상)

| 허가증/인가증 | 신청비용 | 허가증비용 (첫해무료 / 1년 유효) | 허가수정신청 (부지검사 유/무) |
|----------------------|--|-------------------------|----------------------|
| 수입허가증 | S\$500 | S\$500 | S\$300/S\$50 |
| 도매허가증 | S\$500 | S\$500 | S\$300/S\$50 |
| 제조허가증 (외복제 및 내복제) | 한가지 제조 : S\$1,500 두가지 제조 : S\$2,000 | S\$1,500 S\$2,000 | S\$1,000/S\$50 |
| 수출인증서 발급 | 품목당 S\$100(2년 유효) | - | - |

○ 수입허가증 발급 소요기간 : 최소 2개월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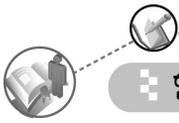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 테스트 보고서
- 성분 보고서
- 구성성분별 효능과 활성·비활성 성분 분류 보고서
- 포장물 관련 리포트
- 제조업체 인증서
-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인증서 등

○ 테스트 보고서 : 제품의 화학적인 구성성분에 대한 평가로서 식품관련연구소에서 인증받은 보고서임

○ 성분 보고서 :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의 구성비율에 대한 평가로서 원재료를 100% 기재해야 함. 한국 제조업체가 작성한 리포트를 인정함

○ 구성성분별 효능보고서 :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거가 서적일 경우 서적명, 저자명 및 관련문구를 기재해야 함

○ 포장물 관련 리포트 : 라벨, 삽지를 포함하여 모든 포장물을 제시해야 함



■ 중금속 허가 제한량

| 중금속 | 허가 제한량 |
|-----|--------|
| 비소 | 5 ppm |
| 구리 | 150ppm |
| 납 | 20ppm |
| 수은 | 0.5ppm |

■ 내복제의 세균 한도범위

| 내복제의 경우 | 한도범위 |
|---------------|-------------------------------|
| 호기성 세균 총양 | 그램이나 밀리리터당 10^5 미만 |
| 호모균과 사상균 | 그램이나 밀리리터당 5×10^2 미만 |
| 1g 또는 1ml에 부존 | 대장균, 노란색 포도상 구균 |

■ 외복제의 세균 한도범위

| 외복제의 경우 | 한도범위 |
|---------------|-------------------------------|
| 호기성 세균 총양 | 그램이나 밀리리터 당 10^4 미만 |
| 호모균과 사상균 | 그램이나 밀리리터당 5×10^2 미만 |
| 1g 또는 1mL에 부존 | 박테리아, 포도상 구균 |

■ 보건식품의 규제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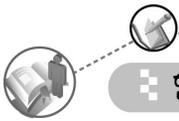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 보건부는 보건식품에 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함. 2003년 1월부터 모든 보건식품에 추가 라벨이 요구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는 공인된 실험실에서 평가를 받은 식품들만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음. 또한 보건당국은 국내외 보건식품 제조업체들을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 점차 보건식품의 포장 방식이 양약의 포장 방식과 비슷해져 구별이 힘들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HAS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소비자들이 보건식품과 양약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겉포장 상자에 “Allowed for sale as a Chinese Proprietary Medicine”라는 추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요구함.

-라벨링 세부사항 : 포장 내 라벨에는 상표명, 제품명, 제품번호, 유통기한, 재료명 및 수량(기밀 제조법이 있는 제품 제외) 표기, 포장 겉 라벨에는 상표명, 제품명, 제품번호, 유통기한, 수입업체명, 판매업체명과 주소, 제조업체명과 주소, 추가 라벨링 부착

■ 건강식품 진입장벽

- 현지 인삼수입업체에 의하면, 수입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어렵고 까다로워 비관세장벽으로 느낌. 검사보고서의 경우, 싱가포르 보건당국에서 미국 FDA의 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한국 연구소가 인증한 서류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성분보고서 작성 시 주원료만 기재하고 기타 원료에 대해서는 '기타(Others)'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기타 재료도 필히 100% 작성해야 함
- 이에 따라, 한국수출업체의 서류준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입업체에서는 세부사항까지도 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임. 수입면허 취득 시, 최소 2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류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 및 재제출로 인해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어 건강식품 수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2007년 2월부터 과다하게 인상된 수입허가 비용은 인삼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려인삼 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수입의 걸림돌임. 가령, ‘고려인삼은 열을 많이 내는 식품이다’라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위키피디아는 고려인삼 및 중국삼은 찬지역(Cold Area)에서 재배되어 ‘Yang(양)’, 미국삼은 더운 지역(Hot area)에서 재배되어 ‘Yin(음)’의 성질이 강하다고 기술되어 있음.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Ginseng>)과학적으로 검증된 한국인삼을 자료를 토대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글을 올리는 것도 세계인의 고려인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됨
- ❖ 주위키피디아(Wikipedia / www.wikipedia.org) :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인터넷상에서 GNU FDL(GNU 자유문서사용허가서)에 따라 모두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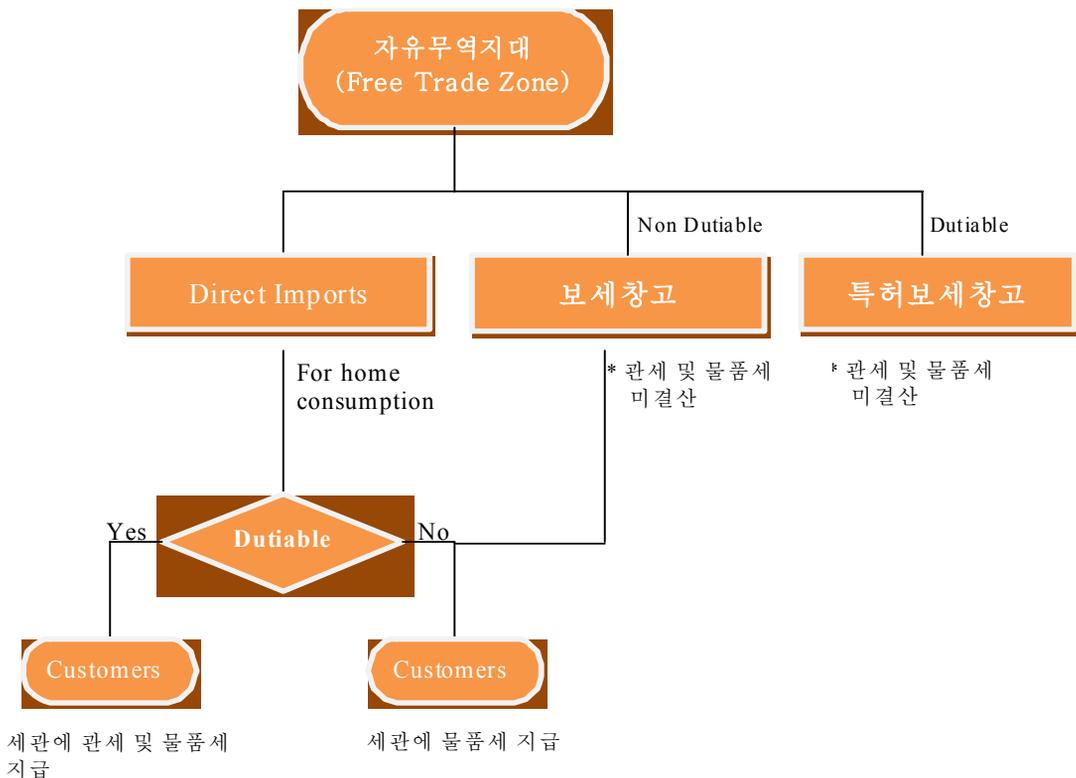
○ 수입 시 문제발생 사례

-2006년 현지 인삼수입업체는 그동안 거래해 오던 한국 인삼수출업체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수입된 적이 있는 동일제품의 이름을 상이하게 표기하여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음. 수입업체측은 정부당국에 S\$1,000의 벌금과 수입된 모든 제품을 한국으로 반송시켰음. 수입업체는 현지에서 판매 가능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수출업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음

다. 수입 시 일반사항

1) 전반적인 수입흐름

-보세창고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세 납기 연기유예 가능. 즉, 수입해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국내시장으로 반출되는 시기에 물품세를 납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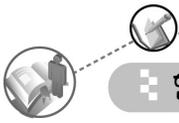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2) 관세제도

- 싱가포르에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주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대상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시 물품세(GST/Goods and Services Tax : 2007년 7월 1일 5% →7% 인상)를 부과하고 있음. 물품세는 싱가포르 영외로 재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비관세장벽, 쿼터 등 무역장벽은 없음. 일부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의 설정은 무역장벽차원이 아닌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따른 정책적 고려에서 책정된 것임
- 수입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은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중이 약 53%로 수입품목의 대부분이 수출용 원자재이거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주변국가로의 재수출을 위한 용품으로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확대와 연결되는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에서 기인. 반면 2006년 3월 한국-싱가포르 FTA 발효 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FTA를 악용하여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우회·위장 수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음

3) 통관절차

- 통관업무 흐름도
 - 물품 도착 통보 (세관→수입자)
 - TradeNet을 통한 통관 승인 신청(수입자→세관)
 - 통관 승인번호 접수 (세관→수입자)
 - 물품 수령
 - 수입검사
 - 통관완료
- 항만운행사 PSAC(PSA Corporation, www.internationalpsa.com)의 컴퓨터 전자시스템을 통해 싱가포르 세관은 수입화물 도착 전 이미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처리를 종료하고, 수입자에게 물품인수를 통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검사 및 통관 수속 완료까지 30분 가량 소요됨
- 통관여부 및 관세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미 판정이 되어 있으므로 세관에서의 검사는 상업송장상의 품목과 실제 통관대상 품목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함



4) 수입식품 판매 및 라벨링

○ 수입식품 판매

싱가포르에서 수입식품 판매 시 식품판매법(The Sale of Food Act)과 식품규정(Food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함. 이는 식품표준, 식품표시 조항기준, 식품광고 및 라벨기준, 허가된 식품첨가물 목록,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량, 화학물질 및 미생물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제품, 신기술, 신첨가물과 바이러스 또는 식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음

○ 식품 라벨링 제도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제품 및 모든 수입된 식품은 현행 식품규정 제 4장에서 정하고 있는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식품 라벨링 규정은 AVA의 식품통제국(Food Control Division)에서 주관하며 가공식품과 음료의 광고규제도 포함함. 식품 라벨링 규정은 제품이 싱가포르 세관영역에 수입되기 전 싱가포르의 식품공전을 따를 것을 요구하며, 비포장 형태로 소매되는 식품과 같이 공식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포장식품에 대해 적용됨

○ 시장에 유통되는 포장식품 라벨링 기준

- 제품명 및 제품에 대한 설명
- 중량순서에 따른 원료리스트
- 순중량 또는 함량
- 제조업체, 수입업체, 포장업체 및 공급업체 주소와 이름
- 제품 원산지
- 초콜렛 등의 특정범위에 해당되는 식품에 유효기간 표시
- 식품공전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
 - 인공감미료 첨가식품
 - 로얄젤리 또는 로얄젤리 첨가식품
 - 방사선조사식품과 방사선조사 원료 첨가식품
 - 영양성분과 비타민, 미네랄 첨가식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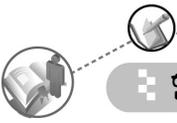
○ 기타 : 라벨링에는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 보건식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THE MEDICINE(ADVERTISEMENT & SALE) ACT의 규정을 기준으로 함

5) 수입식품 광고

잘못된 정보나 라벨 표현에 대한 규정은 식료품 광고에서도 적용되며, AVA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광고 및 수입해서는 안되며, 보건식품 및 담배광고는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4. 해소방안 및 향후 전망

- 인삼의 경우, 싱가포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TV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고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 및 택시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고려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인삼업체 Eu Yan Sang은 미국인삼업체(Wisconsin Ginseng & Herb Co)와 판매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 TV나 신문 등을 통해 미국삼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
- Eu Yan Sang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해마다 약 15~20% 이익증가율을 창출하고 있음. Eu Yan Sang과 같은 인지도가 높고, 이미 상당수의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고려인삼 수입업체로 확보하여, 동남아지역에 고려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이외, 건강식품 취급업체로는 'Tong IL Singapore'로 현재 약 20개 넘는 매장에 한국인삼을 유통시키고 있음.
(전화번호 : +65-6842-4344, 담당자 : Mr.Tan, tongil2013@gmail.com)
- 동남아 관할지역에서 농산물 판촉전을 실시할 때, 조그마한 코너에 건강식품 마켓 테스트를 함께 실시하여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파악하고 공급함으로써 한국산 건강식품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임
-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건강식품 판촉전을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기간 동안에만 수입 물량 및 판매실적이 증가하며, 행사가 끝나면 수출실적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원업체 선정 등 장기간 고려인삼 수출 증가에 기여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료출처

- www.ava.gov.sg
- www.customs.gov.sg
- www.hsa.gov.sg
- www.iesingapore.gov.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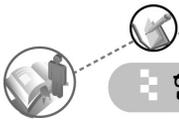
[참 고]

1 싱가포르 시장 현황

- 싱가포르의 2007년 식료품 총 무역액은 170억불(\$\$)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식료품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남아공,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임
- 다민족국가로 현재 인구의 70%가 중국계, 나머지는 말레이인, 인도인, 타밀인 등 기타 민족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음
- 동남아의 여행 및 교통의 중심지이며, 많은 호텔, 레스토랑, 기내음식 공급업체, 선박 취급업체, 병원, 클럽 등 다양한 음식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2009년 및 2010년에는 싱가포르 최초의 카지노가 오픈할 예정이며, 수많은 여행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것으로 보임. 이에 식품서비스부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여행객 및 업무관련 출장자의 수는 약 1,030만 명으로 집계됨

2 한국-싱가포르 관계

- 한국·싱가포르 양국관계는 해외 및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교역, 투자, 건설부문 등에서 한국의 중요한 상대국으로서 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싱가포르는 상호 10위권내 교역상대국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7대 수출시장임. 현재 약 1000여개에 달하는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상당수 기업이 동남아 지역본부로 활동하고 있음
- 2005년 8월 한국-싱가포르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2006년 3월 2일 협정이 발효되었음. 싱가포르와의 FTA는 단기적인 교역확대 보다는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된 것임



3

농축수산물 수출입 현황

수입 현황

(단위 : 톤, S\$천불)

| 일자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과일 | 371,509 | 384,188 | 365,091 | 400,556 | 358,177 | 419,028 |
| 채소 | 359,085 | 311,723 | 371,295 | 313,833 | 389,807 | 349,817 |
| 쇠고기 | 18,691 | 98,961 | 24,385 | 118,800 | 27,780 | 145,140 |
| 닭고기 | 147,560 | 356,143 | 142,946 | 321,459 | 164,325 | 423,126 |
| 양고기 | 8,032 | 42,872 | 8,648 | 44,315 | 9,489 | 51,191 |
| 돼지고기 | 83,448 | 322,236 | 89,017 | 343,909 | 95,423 | 359,690 |
| 해산물 | 85,258 | 293,473 | 83,254 | 309,148 | 84,689 | 332,395 |

가. 과일 및 채소

- 2007년 모든 수입품목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과일 및 채소는 각각 5%, 11% 증가, 수입이 가장 많은 과일 품목으로는 사과(S\$63,907천불), 오렌지(50,467), 포도(47,928) 및 배이며, 채소는 양배추(30,735), 토마토(28,353), 감자(24,828) 등이 있음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사과(중국, 남아공, 미국, 뉴질랜드), 오렌지(호주, 미국, 중국), 딸기(미국, 한국, 이집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포도(호주, 미국, 칠레), 감(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한국)이며, 채소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한국산 농산물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실시된 배, 단감, 포도 및 딸기의 프로 모션을 통해 한국 신선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입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금년(1~6월) 한국산 딸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함

나. 육류 및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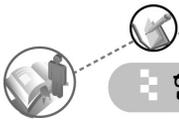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 쇠고기보다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를 두배 이상으로 즐겨먹으며, 양고기 소비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품목별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쇠고기(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닭고기(브라질, 미국, 태국), 양고기(호주, 뉴질랜드), 돼지고기(호주, 중국, 브라질) 등임
- '08년 1~6월 해산물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게(산것/S\$26,083천불), 신선새우(18,180), 상어(15,830) 및 냉동새우(14,234), 고등어(14,207) 등이며, 수입 주요 대상국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임

■ 수출 현황

(단위 : 톤, S\$천불)

| 품목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과일 | 34,440 | 48,876 | 32,335 | 51,382 | 26,556 | 48,934 |
| 채소 | 17,648 | 22,538 | 18,945 | 23,262 | 15,808 | 20,567 |
| 쇠고기 | 2,737 | 9,012 | 7,642 | 22,003 | 8,123 | 23,531 |
| 닭고기 | 11,450 | 21,653 | 16,143 | 28,125 | 14,499 | 33,381 |
| 양고기 | 277 | 1,820 | 259 | 1,830 | 249 | 1,939 |
| 돼지고기 | 960 | 3,369 | 729 | 2,590 | 860 | 3,070 |
| 해산물 | 2,750 | 12,558 | 3,208 | 14,930 | 3,013 | 18,313 |

- 싱가포르의 총 인증농가 수는 264개, 총 농가면적은 764헥타르에 불과하며, 농축 수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이 매우 저조함. 2007년 과일·채소의 전년대비 수출실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닭고기 및 해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큰 변동이 없음



4 할랄(Halal)식품 현황

■ 할랄인증 품목의 잠재력

- 회교도는 전 세계적으로 약 18억명으로 인구의 2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회교도인 국가는 57개국임. 동남아는 2억 5천만명을 상회하며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의 회교도인 수가 거대함
-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의 회교도들은 한국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대형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한국음식들을 시도해 보고는 싶지만 할랄인증 마크가 없어 선뜻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음. 할랄인증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며 종교적인 문제 외에도 해당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표시로서 마크 부착 시 이슬람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임
- 참고로, 한국에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할랄인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서, 제조공정도, 생산허가서 및 성분분석표 제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약 일주일 소요되며, 비용은 건당 30만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임

■ 할랄과 비할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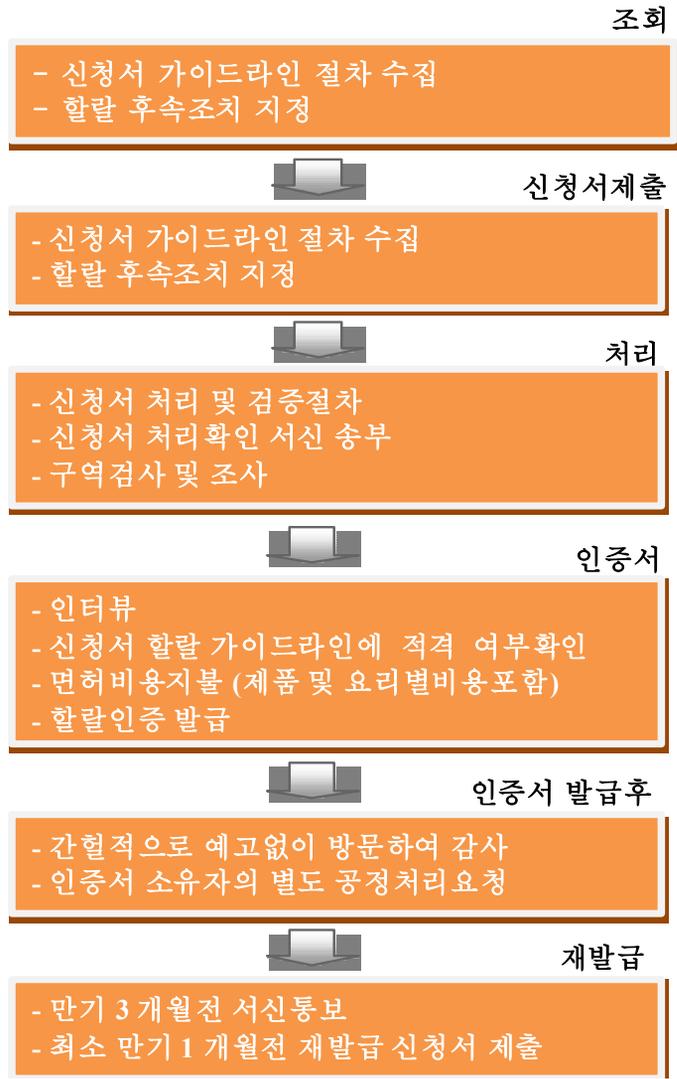
- 동물은 육지동물과 해양동물 크게 두가지로 분류
 - 육지동물은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해 도살되지 않은 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등을 제외한 육류는 할랄로 인정
 - 해양동물은 물고기같이 수중 이외에서는 생존 불가능한 해양수산물과 독성이 있거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수중동물 등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 음료는 독성이 있거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료와 알콜성분이 있는 음료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할랄임
- 명백히 할랄이나 비할랄로 분류되지 않은 '애매한' 또는 '의심스러운' 식음료들이 이 분류에 속함. 예)레시틴 함유물 - 이는 식물뿐아니라 동물에서도 추출가능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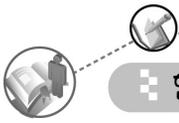
식물에서 추출된 레시틴은 할랄로 분류되나 돼지 또는 회교도 법에 의해 도살되지 않은 동물에서 추출되었다면 비할랄로 구분

■ **제품의 저장, 진열, 접대 및 위생관리**

제품의 저장, 진열, 판매 및 접대 시 비할랄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가공 공정마다 할랄라벨을 부착해야 함. 음식이 건강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에서 개인위생, 의복, 장비 및 가공시설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함

■ **싱가포르 할랄 인증처리과정**





○ 신고내용

- 제품항목 : 제품이름, 원료리스트

- 제품원료리스트 : 재료항목, 브랜드, 제조업체, 할랄인증위원회(부착요)

○ 비용

| 품목 | 2006년 | 2007년 |
|---------|--------------------------------------|----------------------|
| 할랄인증신청서 | 일반처리/ 빠른처리 | 신청서당 S\$100 / S\$175 |
| 제품 | 할랄증명서 발급 | S\$500(1년) |
| | 소매음식점운영 | 제품종류 및 브랜드당 S\$25 |
| 소매음식점운영 | 음식점 홀 전체면적 185.5m ² 미만/이상 | S\$480/S\$640(1년) |
| | 가금류도축장 | S\$320(1년) |
| | 제품의 보증 | S\$480(1년) |
| | 저장시설 | S\$50(1년) |
| | 계절별영업, 무역박람회 등에서 7일 이내 영업을 하는자 | S\$65(1년) |
| 주방시설 | 시설이 185.5m ² 미만/이상 | S\$630/S\$670(1년) |
| 가금류도축장 | 할랄증명서 발급 | S\$200(1년) |
| | 할랄인증서 마크사용 | 마크당 S\$0.01 |
| 제품의 보증 | 할랄인증서 발급된 수출입/재수출제품 | 위탁판매당 S\$120 |
| | 할랄인증서 마크사용 | 상자당 또는 드럼당 S\$0.25 |
| 저장시설 | 할랄증명서 발급 | S\$670(1년) |

❖ 기 스케줄 및 비용은 싱가포르 내에 주재하는 회사에만 해당되며, 국외회사의 경우 사례별로 비용이 적용됨. 기타 자세한 정보는 www.muis.gov.sg 참조